

## ‘여성과 문화’ 학술연구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아모레퍼시픽재단(이하 “재단”) 정관의 시행 세칙인 「사업 운영 규정」 제2장의 학술연구지원사업(공모사업) 중 ‘여성과 문화’에 관한 운영 방침을 규정한다.

**제2조(사업 목적)** ‘여성과 문화’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재단”의 장기적 연구 사업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우수 연구를 발굴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국내외 학술연구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우수한 연구결과물의 단행본 출간을 지원하는 등 학술연구의 대중적 확산 및 소통을 도모한다.

**제3조(기획위원회 운영)** ‘여성과 문화’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장기적 발전 및 지속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브레인” 역할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4조(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1. 기획위원회의 구성 요건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책임자 1인, 기획위원 3인
- 2) 연구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임기는 “재단” 학술연구위원회 운영 약정서의 약정기간으로 한다.
- 3) “재단”과 연구책임자의 협의 하에 기획위원을 확정한다.
- 4) 기획위원의 변경이나 충원이 필요할 경우 “재단”과 연구책임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기획위원회는 “재단”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재단”의 학술연구활동 중 ‘여성과 문화’ 관련 연구과제(공모)의 기획
- 2) ‘여성과 문화’ 관련 기획 연구과제 도출
- 3) 제2호에 따라 도출된 연구과제의 수행 가이드라인 수립
- 4) 제2호에 따라 도출된 연구과제의 연구계획서 심사
- 5) ‘여성과 문화’ 관련 신규사업 기획에 대한 자문
- 6) ‘여성과 문화’ 관련 중장기 사업 방향성 기획 및 자문
-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하여 “재단”이 청하는 업무

**제5조(전문 심사위원단 운영)** 완성도 및 전문성이 높은 연구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6조(전문 심사위원단 구성 및 역할)**

1. 전문 심사위원단의 구성 요건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인문 2인, 사회과학 2인
- 2) 위원의 변경이나 충원이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획위원들이 상호 협의하에 정하기로 한다.
- 3) 심사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심사위원 증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전문 심사위원단이 추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심사 결과에 따른 검토 및 최종 승인은 전문 심사위원단이 책임 수행한다.

2. 심사위원단은 “재단”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재단”의 학술연구활동 중 ‘여성과 문화’ 심사 진행
- 2) 연구 중간보고서 검토 및 연구진행 경과 검토 및 피드백
-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와 관련하여 “재단”이 청하는 업무

**제7조(지원 범위 및 분야)** ‘여성과 문화’의 지원 영역은 연구논문 집필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분야’와 단행본 출간 원고집필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분야’로 구성한다. ‘여성’과 ‘문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연구분야는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과제를 지원범위로 하고, 출판분야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모든 분야를 지원범위로 한다.

**제8조(지원 대상)** ‘연구분야’는 국적을 불문하고 최근 5년간 KCI등재지(후보지 포함) 주저자 논문 3편 이상의 연구경력을 지닌 박사학위 소지자로, 주제에 맞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연구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출판분야’는 국적을 불문하고 최근 5년간 KCI등재지(후보지 포함) 주저자 논문 3편 이상의 연구경력을 지녔거나 단행본 출간이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및 대학 또는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자로, 주제에 맞는 출판계획서와 최소 한 장(Chapter)의 완성된 원고를 제출하고 해당 연구 및 출판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연구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9조(지원 한도)** 지원한도는 다음의 조건을 따른다.

‘여성과 문화’의 연구분야는 편당 1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출판분야는 편당 30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연구비 지원 한도는 “재단”사무국의 협의 하에 변경 가능하다.

**제10조(지원 심사)** 본 사업의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1) 전문 심사위원 4인
- 2) 외부전문가 0인
- 3) “재단” 이사 과반수 이상

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 1) 1차 심사: 외부전문가 심사
- 2) 2차 심사: 전문 심사위원단 심사
- 3) 3차 심사: “재단” 이사 최종 심사

**제11조(사업비 지원)**

- 1) “재단”은 연구자, 연구자가 지정한 산학협력단과의 연구지원 약정에 의거, 연구비를 지급한다.
- 2) 연구비는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하게 집행한다.
- 3) 산학협력단은 연구자의 연구비 내역 구성 및 집행,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이에 따른 간접비는 전체 연구비의 5% 이내로 지정한다.
- 4) 연구자가 산학협력단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 “재단”사무국과 상의하여 지급 방식을 정하도록 한다.

**제12조(지원과제의 관리)** “재단” 사무국은 과제별로 지원대상자 및 기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원 과제별로 현황표(“재단” 홈페이지-관리자페이지)를 작성 비치한다.

**제13조(연구결과물의 정의)**

각 지원분야에 따른 연구결과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분야의 연구결과물은 학술논문으로서, KCI 등재지(후보지 포함) 또는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의미한다.
- 2) 출판분야의 연구결과물은 “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간한 단행본을 의미한다.

#### 제14조(연구결과물의 귀속 및 이용)

- 1)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법상, 공법상, 지식재산권법상의 모든 권리 중 일신 전속적인 것은 연구자에게 귀속된다.
- 2) 다만 연구자는 “재단”과 “재단”의 관련 회사(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한 기업집단 내 회사의 포함)에 대하여 연구 약정으로 발생한 연구결과물을 기간 제한 없이 국내외에서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 3) “재단”이 해당 연구결과물의 출판을 결정한 경우 연구자는 자체적으로 출판사 섭외 및 출판계약을 통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출판될 수 있도록 하며, 출판에 필요한 비용은 “재단”이 별도로 지원한다. 그 출판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범위, 행사 방법, 기간 등을 “재단”은 연구자와 합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 4) 제3항의 출판사는 이 계약에 따른 결과물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출판권을 가지며,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재단”의 출판권 설정 등록 등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출판으로 인한 인세 수입은 연구자에게 귀속된다. 단, 초판(1,500부) 인세는 도서로 지급한다. 단, 연구자는 전담출판사와 출판권설정 계약 체결 시 이 계약에 따른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5) “재단”은 연구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구자를 대신하여 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공표권, 성명표시권, 초상권, 동일성 유지권 등의 행사를 대리하거나 위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행사를 저작권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다.
- 6) “재단”은 연구자에게 연구 결과의 대외적 공표를 위한 “재단”의 홍보물 제작 협조 및 同 홍보물의 “재단” 홈페이지 및 관련 제작물 게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 7) “재단”은 본 연구 결과물 및 연구지원 사실을 “재단” 및 “재단”과 관련 회사(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 내 회사)의 광고 및 홍보 등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 8) “재단”은 제3항의 출판사와의 협약이 종료되거나 그 계약 내용 및 출판사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연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 9) “재단”은 구체적인 연구 내용에 따라 연구자가 “재단”의 후원사인 (주)아모레퍼시픽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이 계약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5조(연구자 의무 사항)

### <연구 분야>

- 1) 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1년 내 KCI 등재지(후보지 포함) 또는 연구 종료 후 2년 내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2) 연구주제와 내용은 다른 간행물이나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3) 연구보고서 제출 의무
  - 중간보고서 제출 : 연구 개시 후 6개월 이내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각 보고서 형식은 재단 서식에 준하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 연구자가 직접 등록해야 한다.
  -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잔여 연구비를 미지급함.
- 4) 연구자는 “재단”이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 연구내용에 대한 발표를 요청할 시 이에 응해야 한다.
- 5) 학술지에 논문 게재 시 ”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국문표기>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영문표기> “This research has been supported by the AMOREPACIFIC Foundation.”

### <출판 분야>

- 1) 출판 지원은 단행본 발간을 전제로 한 학술사업이므로,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을 연구 시작 후 2년 내 출판 가능한 원고로 마감하여 제출해야 한다.
- 2) 연구주제와 내용은 다른 간행물이나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3) 연구보고서 제출 의무
  - 중간보고서 제출 : 연구 개시 후 1년 이내 제출
  - 1차년도 중간평가 실시 : 연구 개시 후 1년 시점에 중간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재단”이 수정, 보완을 요구할 시 3개월 후 수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각 보고서 형식은 재단 서식에 준하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 연구자가 직접 등록해야 한다.
  -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잔여 연구비를 미지급함.

- 4) 연구결과물이 출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3개월 내 수정한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 5) 선정자는 “재단”이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 연구내용에 대한 발표를 요청할 시 이에 응해야 한다.
- 6) 출판되는 단행본에 ”재단” 지원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국문표기>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영문표기> “This research has been supported by the AMOREPACIFIC Foundation.”

- 7) “재단”이 연구결과물의 출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연구자는 이외의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구결과물을 출판할 때에는 제6항과 같이 해당 출판물이 “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진행된 연구임을 명시해야 한다.

#### 제16조(연구 기간 연장 규정)

- 1) 원칙적으로 연구 기간 연장은 허가하지 않는다.
- 2) 다만 예외적으로 합당한 사유(질병이나 상해 혹은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 한함)가 있을 시 “재단”에서 별도 검토 후 승인여부를 재단 및 산학에 통보한다.

#### 제17조(규정 미준수 연구자 제재 조치)

##### <연구 분야>

- 1) 연구 종료 후 1년 내 KCI 등재지(후보지 포함) 또는 연구 종료 후 2년 내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못할 시 잔여 연구비를 미지급한다. 잔여 연구비는 “재단”과 “연구자”의 연구약정서에 따라 연구비 총액의 50%에 해당한다.
- 2)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표절, 중복게재 등) 및 그 밖에 “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한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
- 3) 규정 미준수 연구자의 제재 조치는 재단 사무국과 기획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거쳐 연구비 미지급 및 환수를 결정한다.

##### <출판 분야>

- 1) 연구 시작 후 2년 내 출판 원고를 제출하지 못할 시 잔여 연구비를 미지급한다. 잔여 연구비는 “재단”과 “연구자”의 연구약정서에 따라 연구비 총액의 70%에 해당한다.
- 2)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표절, 중복게재 등) 및 그 밖에 “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한 사업운영규정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

3) 규정 미준수 연구자의 제재 조치는 재단 사무국과 기획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거쳐 연구비 미지급 및 환수를 결정한다.

### 제18조(연구비 지급 규정)

#### <연구비 정산 규정>

- 1) 기관(대학 또는 연구소) 소속 연구자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에 연구비 정산을 해주시기 바람. 연구자는 재단에 별도 연구비 정산 보고 필요 없음.
- 2) 개인 연구자(소속 기관 없음)의 경우: 연구자는 재단에 별도 연구비 정산 보고 필요 없음.

#### <연구 분야>

- 1)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내(해외 학술지의 경우 2년 내) KCI등재지(후보지 포함)에 논문을 게재하지 못할 시 잔여 연구비를 미지급함.
- 2) 연구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잔여 연구비를 미지급함.
- 3)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표절, 중복게재 등)와 같은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시 연구비를 전액 환수함.

#### <출판 분야>

- 1) 연구 개시 후 2년 내 출판 원고를 제출하지 못할 시 잔여 연구비를 미지급함.
- 2) 연구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잔여 연구비를 미지급함.
- 3)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표절, 중복게재 등)와 같은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시 연구비를 전액 환수함.
- 4) 재단에 제출한 최종원고의 출판적합성심사에 합격한 과제 대상으로 연구자와 재단이 협의한 출판사와 출판계약 및 출판 진행하며 출판계약 30%, 출판 40% 연구비는 출판사(출판사의 정의: 연구자와 재단이 협의한 출판사 및 연구자가 직접 선정한 타 출판사에 한함)와 계약시에만 지급함.

### 제19조(출판 규정)

1) 출판 분야의 경우, 원고 접수 시 재단과 협의하여 일반 공모 일정과는 별도의 심사 및 지원절차를 밟게 된다.

- 2) 출판이 확정된 원고의 단행본 출간은 연구자와 재단이 협의하여 선정된 출판사 및 연구자가 직접 선정한 타 출판사를 통해 진행한다.
- 3) 출판비는 별도 지원한다.
- 4) 출판 시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있으며, 출판권은 연구자와 재단이 협의한 출판사 및 연구자가 직접 선정한 타 출판사에 귀속한다.
- 5) 연구자의 출판권 설정 대가(인세)는 연구자와 재단이 협의한 출판사 및 연구자가 직접 선정한 타 출판사에서 연구자에게 지급한다.
- 6) 본 재단에서 연구 최종결과물의 출권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선정자는 타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나 해당 출판물에 반드시 아모레퍼시픽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명시해야 함. 타 출판사와 출판계약시에도 잔여 연구비(출판계약 30%, 출판 40%)는 지급한다.

<부칙> - 규정 제3조 내지 제10조,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19조  
2022.6.9. 일부 개정

이 규정은 2022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